국외출장보고서

[장애인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023. 10.



목 차

١.	연수	목적		•	 	•		 •		•	•	 •	1
ΙΙ.	연수	개요			 		 			•			1
III.	사전	연구 수형	뱅				 . .	 	-				3
IV.	세부	연수 내용	<u>2</u> .		 	. ,	 •			•		 •	4
٧.	평가	및 시시	·점				 	 					27

I 연수 목적

- □ 미국 장애인유권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사례·선거제도 연구
- □ 미국 장애인참정권 보장의 구체적 사례 등 경험을 통한 장애인유권자가 요구하는 참정권 보장의 구체적인 절차 및 대안 모색

Ⅱ 연수 개요

① 연수주제: 장애인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② 연수국가: 미국(워싱턴, 뉴욕)

③ 연수기간: 2023. 9. 6.(수) ~ 9. 16.(토) [8박10일]

④ 연수대상자

연번	성 명	소속(시·도)	직 급	성별	비고
1	강승용	전북 홍보과	행정주사	남	팀장
2	안영관	전북 장수군	행정사무관	남	
3	신범석	전북 전주시완산구	행정주사	남	
4	신민우	전북 전주시완산구	행정주사보	남	
5	문영석	전북 지도과	행정주사	남	
6	임재원	중앙 총무과	행정주사	남	
7	유춘식	전북 익산시	행정주사	남	
8	이성현	전북 홍보과	행정주사보	남	

⑤ 참관 및 방문기관

- O 미국선거위원회(EAC,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 EAC의 업무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현황 등 파악
- O 국가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 National Disablilty Rights Network)
 - 장애인유권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사례 파악
- O 미국국회의사당
- 뉴욕시선거위원회
 -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한 면담
 - 뉴욕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선거권자를 위한 투표보조장치 (예, ES&S AutoMARK, Sequoia ImageCast) 등을 실제 체험
- O 뉴욕하원의원(9.12.실시) 27선거구 Special Election 투표 참관

⑥ 연수일정표

일차	일 자	지역	세부일정	비고
1	9. 6.(수)	인 천/ 워싱턴	· 전북 → 인천국제공항 이동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워싱턴 도착	
2	9. 7.(목)	워싱턴	· 기관 방문 전 사전 회의 등 · 미국선거위원회(EAC) 방문 및 인터뷰	
3	9. 8.(금)	워싱턴	· 워싱턴 대사관 방문(재외선거관 면담) · 국가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 담당자 화상회의	
4	9. 9.(토)	워싱턴	· 미국국회의사당 방문 · 현장 수집 자료 및 인터뷰 결과 정리	
5	9.10.(일)	워싱턴/ 뉴 욕	·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	
6	9.11.(월)	뉴 욕	· 현장 수집 자료 및 인터뷰 결과 정리 · 뉴욕시선거위원회 방문 전 준비 회의	
7	9.12.(화)	뉴 욕	· 뉴욕시선거위원회 방문 및 면담 · 뉴욕시하원의원 27선거구 Special Election 투표소 참관	
8	9.13.(수)	뉴 욕	· 현장 수집 자료 및 인터뷰 결과 정리	
9	9.14.(목)	뉴 욕	· 뉴욕뉴왁공항 출발	
10	9.16(토)	워싱턴/ 인 천	· 인천국제공항 → 전북 도착	

Ⅲ 사전 연구 수행

① 연구기간: 2023. 5. 2. ~ 8. 25.

2 방 법

- O 각종 학술 논문 등 문헌자료 검토
- O 미국선거위원회(EAC), 뉴욕시선거위원회 및 국가장애인권리네트워크와 방문·일정 등 협의
- O 방문기관 홈페이지 및 선거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료 수집
 - 미국의 선거·정당제도 개요, 미국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제도, 방문 기관의 업무 등
- O 방문기관에 대한 질의서 작성

③ 사전 조사·작성 자료 등

- O 미국선거위원회(EAC) 등 방문기관의 장애인 관련 추진 사업 파악
- O 각 방문기관 질문 자료 작성
- O 미국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조사 자료 수집 등
 - 미국선거지원법(HAVA),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유권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절차
 - 장애인참정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사회연구 제10권/ 김명수, 2020년)
 -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효과성 분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석원, 2020년)
 -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제공 현황(선거연수원/곽동진, 2017년)

Ⅳ 세부 연수 내용

① 미국선거위원회(EAC,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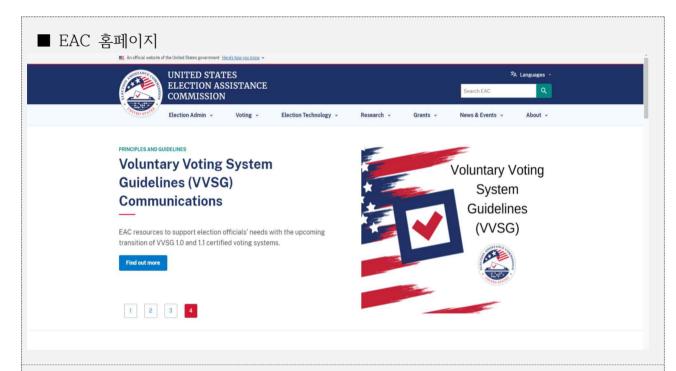
1. 기본현황

O 위 치: 633 3rd Street NW, suite 200, Washington, DC 20001

O 홈페이지: https://www.eac.gov

O 전화번호: +1 866-747-1471

2. EAC(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기관 정보



- 미국선거위원회 (EAC)는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AVA)에 의해 설립됨. 독립적인 위원회로 미국선거지원법(HAVA) 요건에 맞는 지침서를 개발하며, 자율투표시스템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고, 선거시행안내에 대한 국가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EAC는 HAVA 기금 사용의 감사를 비롯해 Test 연구소에 대한 승인 및 투표시스템 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개발된 전국 우편 유권자 등록 양식을 보존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 EAC는 상원을 통해 인준 되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4명의 EAC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HAVA 진행사항이나 관련된 이슈에 대한 발표는 물론, 국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는 자체 진행사항이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 모임이나 청문회도 개최함.

3. EAC 방문 및 인터뷰

의 일 자: 2023. 9. 7.(목)

○ 장 소: 미국선거위원회(EAC) 사무실

○ 면담자: Benjamin W. Hovland 위원(부의장)

4. 주요내용

- O 미국선거위원회(EAC) 주요 업무
- O 장애인참정권 강화를 위한 EAC 역할
- O 장애인선거운동 활성화 및 정치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5. 질의응답

- Q. 대한민국은 통일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선거위원회(EAC)도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 사무를 수행하나요?
- A. EAC는 연방 단위의 기관이며 주로 4개의 메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①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특정 주에 분배 ② 선거 장비의 테스트와 인증 업무 ③ 승인된 시스템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④ 2년 주기로 EAVS(Election and Administration Voting Survey)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장비에 있어서는 법률(Help America Vote 2022)의 근거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성(직접·비밀 투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년마다 작성하는 EAVS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주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Q. 미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주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선거지원위원회(EAC)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 A. 각 주마다 선거관리시스템 차이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인에게 잘 대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편투표를 희망했습니다. 이전에는 3개의 주(오리건, 워싱턴D.C., 콜로라도)에서 오직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개의 주에서 그동안 얻은 교훈을 전국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우편투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EAC는 각 주 또는 선거 공무원에게 무엇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가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다른 주 또는 동료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 Q. EAC 창설 이후 장애인 선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 A.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선거장비에 관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법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① 각 주에서 실천하고 있는 좋은 투표 방법 ② 투표소마다 장애인 접근성 높이는 방법(접근성을 높인 주차장, 넓은 출입구, 선거장비 등) ③ 투표소 장애물에 대한 원인, 대안에 대한 보고서 등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Q. EAC에서는 투표시스템 정비, 투표 장비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장비 개선이 있다면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 A. 이전에는 투표시스템, 투표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또는 각 주마다 달랐습니다. 또한, 선거 장비의 가격이 높아서 모든 투표소에 선거 장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접근성, 실용성, 보안 향상을 위해 Voluntary Voting System Guidelines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 Q. 미국은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를 위해서 EAC 뿐만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A.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는 EAC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AC에서는 접근성 강화 및 투표편의를 위해서 각 주정부에 통일된 선거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ADA체크리스트가 바로 그 것입니다. 또한, 미국정부회계감사원에서도 장애인유권자 투표소 접근성과 각 투표소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용지 기표시스템, 대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권고하는 등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전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Q. 작년 중간선거에서 장애인투표 관련 쟁점 이슈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EAC는 항상 장애인이 투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다른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HAVA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EAC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정부관계자, 전문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 Q. EAC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자료가 있나요?
- A.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있는 선거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공무원 교육 시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돕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장애인법 투표소에 대한 ADA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해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투표소 선정, 도착, 출입, 운영 전 과정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Q. Curside Votiong 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 A. 2명의 투표사무원이 투표소 외부로 이동하여 유권자가 차 안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렇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 Q. EAC에서 매 선거이후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피드백 활동이 장애인 투표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 사이 투표율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투표는 많은 장애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었지만, 시각 장애인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방식 전달,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 혹은 서명하는 곳을 만져볼 수 있도록 천공 등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향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보 획득에 대한 차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Q. 시각 장애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 질문합니다. 미국에는 점자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A. 일부 투표소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서 어떤 선거장비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종이투표를 하는 반면에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오디오를 통해 안내해주는 선거장비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Q. 미국의 장애인 선거운동 활성화 및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EAC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있나요?
- A. 위에서 언급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선거의 전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 시키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선거 공무원들로 하여금 장애인 단체들이 선거 과 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National Poll Worker Recruitmenet Day'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선거사무원 지원일을 제정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인식률을 높이고 참여율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원할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 투표에 있어 존재하는 장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관련사진



【EAC 방문 전 회의】



【EAC 관계자 면담 1】





【방문 기념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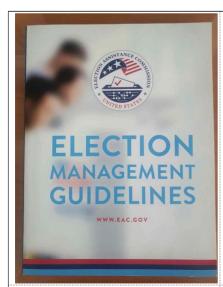


【EAC 부의장과 기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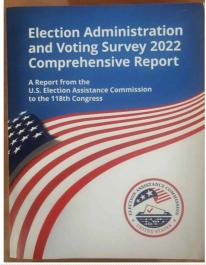


【 EAC 청사 앞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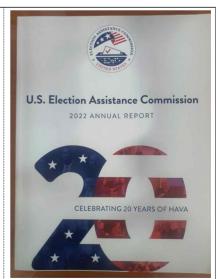
7. EAC 선거 관련 수집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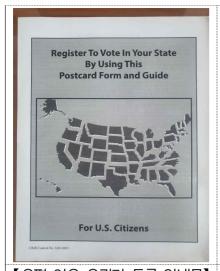
【선거관리지침】



【선거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종합보고서】



【선거지원위원회 정기 보고서】





【우편 이용 유권자 등록 안내문】

【각종 선거권 안내자료】

② 워싱턴D.C. 대사관 방문

1. 기본현황

O 위 치: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O 전화번호: (+1) 202-939-5653

2. 워싱턴D.C. 재외선거관 면담

O 일 자: 2023. 9. 8.(금)

O 대 상: 강호성 사무관

3. 면담 내용

O 미국 선거기관의 개요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O 장애인에 대한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4. 관련 사진



【워싱턴D.C. 대사관 방문】



【재외선거관 사무실 방문】

③ NDRN(National Disablilty Rights Network, 국가장애인권리네트워크) 인터뷰

1. 기본현황

O 위 치: 820 First Street, NE Suite 740 Washington, DC 20002

O 홈페이지: www.ndr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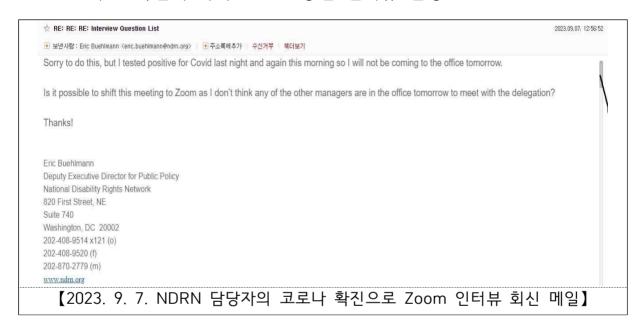
O 전화번호: (+1) 202-870-2779

2. NDRN(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기관 정보



- NDRN(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은 연방 정부에서 위임한 보호 및 옹호 (P&A) 시스템 및 장애인을 위한 CAP(Client Assistance Program)를 위한 비영리 회원 조직이며,
- P&A/CAP 네트워크의 전국 회원 협회인 NDRN은 장애인을 위한 옹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보호에 대한 좁은 초기 초점에서 P&A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장애의 유형이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옹호 서비스를 확대함.
- P&A와 CAP는 학대를 방지하여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본권 옹호, 의료, 교육, 고용, 주택, 교통, 투표, 청소년 및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접근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립한 유일한 법적 기반 옹호 단체이며, 그 임무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적 보호 및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는 모든 주와 미국 영토의 기관이 포함됨.

- 3. NDRN 관계자 화상 인터뷰 진행(Zoom 이용)
 - O 일 자: 2023. 9. 8.(금)
 - O 면담자: Eric Buehlmann (Deputy Executive Director Policy)
 - O 장 소: 워싱턴주 영사관 회의실
 - O 화상 인터뷰 사유
 - 2023. 9. 8. 10:00 NDRN 사무실에서 인터뷰 계획이었으나, 면담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Zoom 통한 인터뷰 진행



4. 주요내용

- O NDRN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 O 장애인참정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활동 상황
- O 장애인참정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내용

5. 질의응답

- Q. NDRN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NDRN은 국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전국적(모든 주에 1개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A. NDRN의 사명은 P&A(Protection & Advocacy)을 통해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기회의 평등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지역 사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Q. 장애인참정권이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NDRN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A. P&A의 기반 중 하나는 PAVA(투표 접근성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P&A는 1) 유권자 교육, 2) 투표 공무원 교육, 3) 등록 운동, 4) 투표소 접근성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한 활동으로 ① National Vote Registration Day에 Off line, ON line(SNS)으로 홍보 ② 각종 기관(병원, 감옥 등)과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을 독려 ③ 지역 선거위원회에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유권자 접근 가능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NDRN에서는 회원들이 장애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법률 및 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Q. NDRN이 장애인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법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장애인 유권자가 보호자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 독립적으로 종이 투표용지에 표시, 확인 및 투표를 하게 노력합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항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투표권법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가지 영역인 투표용지에 표시, 확인, 투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투표 전자기기가 아직 없습니다.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계 및 자금 마련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Q. 현재까지 NDRN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으며,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A. 우리는 최근 HAVA 자금을 받지 못했던 북마리아나 제도와 아메리카 원주민 컨소시엄 P&A가 HAVA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 55개 주에서 활동하다가 57개 주로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며, 우리는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HAVA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수백만 달러 늘릴 수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2002년에 법으로 제정된 미국 투표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에 많은 긍정적인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후견인이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투표권을 잃지 않도록 후견인권에 관한 주법 개정을 지지해 왔습니다. 보호자들이 장애인 유권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Q. 장애인참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 A. 우리는 많은 장애 및 비장애 단체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일을 홍보하여 사람들이 투표 등록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장애인들이 비공개적이고 독립적인 투표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 의회와 연방의회에 요청합니다. 또한, 포럼을 개최하거나 투표하는 장애인 수를 늘리기 위해 주 및 준주에서 특정 투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Q. NDRN의 장애인참정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A.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를 팔로우하고 투표에 관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지지하는 방법과, NDRN 동맹이 되어 우리 작업을 재정적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Q. 장애인참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NDRN이 사회적으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이러한 협력의 대부분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부의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때때로 투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연합의 활동에 있어서는 특정 정당 정치와는 개별적인 영역임. 정당과 함께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하고 양당과 같은 수준으로 협력 및 소통합니다.
- Q. 장애인들에게 참정권보장을 위한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가요?
- A. 궁극적으로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투표(기표, 확인,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방 차원에서 장애인 투표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다른 기관들의 혹은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장애인참정권을 위한 노력과 비교했을 때, NDRN은 어떤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 A. 우리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우리의 관점에서 장애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 자유법을 위해 일하는 다른 조직에서는 볼 수 없는 장애인 권리 관점을 제시합니다.

6. 관련사진



【NDRN 인터뷰 전 회의】



【NDRN 관계자 온라인 인터뷰 1】



【NDRN 관계자 온라인 인터뷰 2】



【NDRN 관계자 온라인 인터뷰 3】

④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방문

1. 일 자: 2023. 9. 9.(토)

2. 위 치: Fitst St Se, Washington, DC 200004

3. 주요내용

- O 초기 미국 의회의 구성 및 현재 상·하원의원 역할 등 확인
- O 국회의사당 및 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질의 응답

4. 미연방 의회 개요

- 미연방 의회 소개
- 미연방 의회에는 상·하 양원의 입법기관이 있으며 의사당 건물의 일부인 두 개의 윙에서 상원과 하원은 따로따로 회의를 진행함. 의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며, 법안·결의안·고위직 임명에 대하여 표결하고, 외국과의 조약 비준에 관한 표결하고, 미연방의사당과 의원사무실이 있는 건물 전체에 버저와 신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원들에게 투표가 임박함을 알림.

- 하원은 남쪽 윙에 있는 하원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며, 모든 법안은 이곳에서 상정 되며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법안들도 다시 이곳으로 보내져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함.
- 상원은 북쪽 윙에 있으며, 상원의장은 중앙 연단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아래 책상 100개 반원형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소속 정당에 따라 배치되어 있음.

■ 상원과 하원

- 상원에는 각주에서 상원의원 2명씩 선출, 의원은 모두 100명임. 상원의원에 선출 되려면 30세 이상으로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하며 적어도 9년간 미국시민이어야 함. 임기는 6년이나 임기 기간이 중복될수 있도록 매2년마다 선거를 통해 1/3을 새로 선출함.
 - 하원의 의석수는 표결권을 갖는 의원을 435명으로 결정하였고, 10년마다 전국 인구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각 주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인구변동에 따라 재조정함. 어느 주든지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음.

■ 미연방 의회의 권한

- 미연방헌법이 규정한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에서 연방정부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부 간에 그리고 미 연방의회의 상·하원 간에 분배되고 분립되어 있음. 미 연방헌법 에는 상·하원 모두가 선전포고, 연방군대 유지, 과세 검토, 자금 차입, 화폐발행, 상업 규제 및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을 제정함.
- 상원만이 조약과 지명자들에 대해 조언과 동의를 할 권한을 갖음. 하원만이 탄핵 절차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고위 관리의 기소)를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원만이 기소된 관리들을 심의하여 해직여부를 결정함.

5. 관련 사진



【국회의사당 외부 기념촬영】



【미국 의회에 관한 설명 청취】

5 뉴욕시선거위원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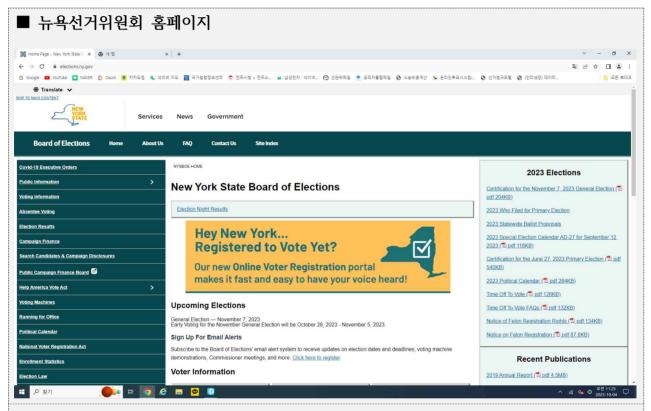
1. 기본현황

O 위 치: 118-35 Queens Blvd Forest Hills, NY 11375

O 홈페이지: https://www.vote.nyc

O 전화번호: 212-487-5400

2. 뉴욕선거위원회 기관 정보



- 뉴욕선거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는 1974년 6월 1일 뉴욕선거와 관련된모든 법률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맡은 초당파 기관으로 행정부 산하에 설립됨. 이사회는 또한 캠페인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공정한 캠페인 강령의 공개 및 제한을규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리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함. 규제 및 집행 책임 외에도 이사회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향상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음.
- 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유권자 등록, 등록변경 신청 및 부재자 투표와 같은 유권자 서비스(유권자 안내서, 투표용지 내용, 투표 방법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표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 실시, 투표 기기 관리, 장애인의 투표편의 업무 등을 담당함.

3. 뉴욕시선거위원회 방문 및 인터뷰

- O 일 자: 2023. 9. 12.(화)
- O 면담자: Bart J. Haggerty (Deputy Chief Clerk)
 Amanda Berinato (Chief Clerk)
 Ariel Merkel (ADA Coordinator)

4. 주요내용

- O 뉴욕시선거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의 종류
- 장애인유권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 장애별(신체, 정신, 발달장애 등) 선거권 보장 지원 방안
- O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방법

5. 질의응답

- Q.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이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기관이 선거사무를 수행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A. 미 연방 그리고 EAC는 선거에 있어 제한 사항, 가이드라인 그리고, 선거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면, 뉴욕시선거위원회 등 각 주에서 실질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Q. 뉴욕시선거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의 종류는 어떻게 되며, 이번에 실시하는 하원의원 Special Election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A. 뉴욕시선거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의회 선거 등 모든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지역인 퀸즈 자치구를 포함하여 5개 자치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Special election)는 하원의원의 사임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Q. 하원의원의 사임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실시기한이 있습니까?
- A. 주지사가 공석임을 알고 난 후 80~90일안에 실시해야합니다.
- Q. 투표소는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며, 투표소 선정(장애인 유권자 포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모든 장소가 투표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퀸즈 지역의 경우, 80% 이상이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총 22개의 투표소를 설치함. 이전 선거에는 약 1300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고 해당 선거인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법에 따라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이 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법에서 명시된 임시경사로를 만들어야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합니다. 그래서 주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근 도로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길에 장애인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만약, 설치한 시설에 의해 사유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뉴욕시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시경사로 경우 못이나 볼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Q. 장애인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A. ADA, HAVA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선거 전에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나요?
- A. 뉴욕시 산하 장애인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1달에 1번씩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선거가 있을 때는 이런 회의에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장비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Q 장애인 유권자 포함하여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나요?
- A. 아니오. 뉴욕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동할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발송하는 거소투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메일을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발송하고[(보안)인터넷 주소(link)를 보내고 그것을 클릭하면 음성으로 전환되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스크린리더'라고 칭함) 그 후 투표한 투표지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 Q. 장애인유권자가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 A. 네.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만 아니면 영구적으로 우편투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장애인 유권자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한다면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보조자를 별도로 두고 있나요?
- A. 임시기표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투표소 앞에는 이동을 돕는 투표사무원이 상주해있고, 가족 등 보호인이 투표소, 기표소까지 동행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마다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 기기가 있습니다.

- Q. 발달장애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기기, 절차가 있나요?
- A. 인지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한 별도의 기구 등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절차에 준하여 장애인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최근 이슈이다. 이런 유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별도 대안은 있나요?
- A. 특별히,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유권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권한은 법원에서 지정한 자 또는 장애인에 한하고 있다.
- Q.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운영하고 있나요?
- A. 모든 투표는 동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 기기와 투표사무원의 투표보조 제공 등을 제외하고 점자형 투표용지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Q.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보조를 원하는 경우 누가 동행하나요?
 장애인유권자와 같이 동행한 가족 또는 투표사무원이 투표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의 비밀은 유지됩니다
- Q. 장애인 유권자를 위하여 별도의 기표대를 설비하나요?
- A. 장애인을 위한 대형 기표대가 있지만, 주로 일반적인 기표대(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Q. 투표소 보조요원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 기기의 사용법을 쉽게 알려주고,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 Q.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보조 기기를 시연해주시겠습니까?(우리가 직접 시연할 수 있나요?) 또한, 이런 보조 기기사용법 등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 A. (투표보조기기는 시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장애인 투표 보조기기 정보를 N.Y. City Campain Finance Board(뉴욕시선거위원회 소속 별도 위원회)에 매년 1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Y. City Campain Finance Board는 이러한 정보를 각 관련 단체에 제공합니다. 또한, 뉴욕시 산하 장애인 전담부서에서 열리는 회의(매달 1회)에서 이런 보조기기 등을 시연도 하고 있습니다.

5. 관련 사진





【뉴욕시 선거위원회 방문 전 회의_뉴욕 재외선거관 배석】



【뉴욕시선거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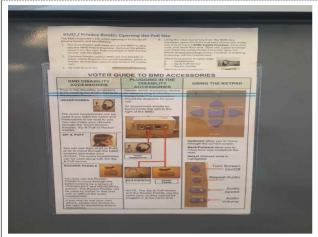
【방문 기념품 전달】



【장애인 투표편의 보조장비 설명 1】



【장애인 투표편의 보조장비 설명 2】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 사용설명서】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

※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

-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보조 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YES / NO) 보조 장치를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에 잭을 연결하여 투표보조 기기 화면에 표시된 후보자 등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투표보조 기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파란색)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추가로, (YES / NO) 보조 장치에 연결한 고무 튜브를 입에 물고 들숨 / 날숨을 통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음.
- 투표사무원의 보조를 받아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함.







【각종 투표소 알림 표지 등】

※ 장애인 위한 투표 편의 안내

- 투표소 앞 도로부터 투표소까지 장애인 이동 동선 알림 표지 다수 게시
- 다문화국가에 따른 법에서 의무적으로 5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아랍어)로 표기된 알림 표지를 제작·제공해야 함.

6. 뉴욕시선거위원회 선거 관련 수집 자료 [원본 별도 제출]



⑥ 뉴욕시하원의원 27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소 참관

1. 일 자: 2023. 9. 12.(화)

2. 참관투표소: PS 29 투표소 외 3개소

- PS 29 투표소: 125-10 23 Avenue, College Point - PS 129 투표소: 128-02 7 Avenue, College Point

- PS 79 투표소: 147-27 15 Drive, Whitestone

√ PS(Poll Site) : 투표소 관리번호

3. 주요내용

- 투표소의 80%는 학교와 공공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투표소 확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선거위원회의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 으로 수락해야 함.
- O 장애인 선거인을 위해 투표소 입구 안내 표지, 임시경사로, 도움벨, 안내요원 등을 투표소에 설비·배치하여 접근성을 강화함.
- 선거인은 거주 지역별 구분·설치된 선거인명부 확인 테이블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주어진 테블릿 PC(선거인명부)에 본인 확인(자필 서명)을 함. 투표사무원은 유권자 신청 시 서명과 투표소 본인확인 서명과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슬리브(투표용지를 표시하는 방법 안내서)를 교부함.
- O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지 스캔기기에 스캔하면 투표함으로 자동투입됨.
-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는 필수적으로 1대 이상 배치되어 투표사무원의 도움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음.

4. 투표소 운영 특이사항

○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 등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되지 않고, 각 정당에서 추천한 당원들로 구성됨.

- O 이들은 선거 실시되는 년도와 무관하게 1년에 1회 이상 선거위원회에의 투표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의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음.
- O 투표소 내부에는 경찰 1명이 배치되어 소란 등에 엄격히 대비함.
- O 아울러 모든 투표소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5개 국가의 언어를 할수 있는 통역관이 배치되어 투표 안내를 하고 있음.















【기표대 내부2(돋보기)】





【기표대 내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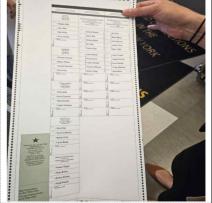
【장애인 투표보조 기기】

스캔 및 투표함】

【투표지 스캔·투입 과정】







【투표참관인】

【선거인 통역】

【투표용지】

평가 및 시사점

1.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미국 선거기관

- ① EAC는 미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HAVA 요건에 맞는 투표 지침서를 채택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구로, 우리의 중앙위원 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편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포함), 우편투표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며, ② 각 주 단위 1개씩 설치된 NDRN은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정당(정치적 편향 없이)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 개선 입법을 요구하며,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활동함. ③ 뉴욕시선거위원회는 투표관리 전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유권자 등록, 장애인선거인의 투표소 투표편의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유사점) 우편을 이용한 거소투표 신고·투표 시스템(거소투표제도)을 시행하고,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협의를 통해 장애인 투표편의 개선에 대해논의 하고 있음. 또한, 투표소 확보 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수적으로설비된 학교·공공기관을 우선 고려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등 우리나라의투표소 확보 절차와 상당히 유사함.
- (차이점) 우편투표는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든지 신청 기간에 제한 없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주법 또는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각각 장애인의 인권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각 주 선거위원회 산하 장애인 전담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제공

- (유사점) 투표소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임시 경사로 설치, 투표사 무관계자의 보조, 우편투표(거소투표) 제도 등을 실시하는 있음.
- (차이점) 장애인의 유권자 투표보조 기기(터치스크린, 구강보조기구 등)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각 투표소에 1대 이상 설치하여 활용하고, 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하는 투표사무원은 정당에서 신고한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었음. 또한 장애인의 우편투표시스템에 있어 투표용지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며 본인 확인 후 PC 등에서 투표하고 직접 투표용지를 출력(전용 프린터 이용)하여 회송하는 시스템임.

3.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도입 여부 등 검토

- 우리나라와 미국 국가간의 관련 법과 제도, 문화 차이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입 또는 폐지 여부 등을 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법 또는 규칙으로 투표소 선정기관의 우선순위[(예시) 1순위:학교, 2순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관 등]를 정하고, **투표소 설치장소 협조를 의무화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투표소 사용 협조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넓은 면적 등 투표편의 시설이 갖춰진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투표소 대부분을 학교에 설치하여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이 매우 좋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등 기관의 비협조로 투표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함.
- 둘째, <u>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u>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미국과 같이 <u>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면</u>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장애 선거인이 1명만을 동반하여 투표소를 찾은 경우에도 장애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나머지 1명을 선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혼란, 좁은 기표소 공간 및 기표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에 대한 시시비비 등을 차단할 수 있고, 투표록 작성 또한 용이함.

- 셋째,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과 같이 <u>거소투표신고 대상자를 확대</u>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렵지 않고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 투표소 주변이 혼잡하여 대형 버스 사용이 쉽지 않은 점, 장애인 선거인 및 노약자 등 교통편의 이용자 수가 적은 점, 최근 조합장선거 시 투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편의 제공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일정 연령 (예를 들어 70세 이상)에 도달한 선거인의 경우에는 장애 유무 및 통·리·반장의 확인 과정 없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연수 결과 평가

- 미국 연방 및 시 선거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기관 방문·인터뷰를 진행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에 대해 노력하는 각 기관의 자세·역할·책임 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 특히, 연수기간내에 미 하원의원 Special Election(보궐선거) 투표일이 있어 뉴욕시선관위의 적극적인 지원(참관차량 및 책임자급 선관위 직원의 동행 등 투표소 참관을 위한 물적, 인적 지원)하에 실제 투표관리 전반과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보조 기기와 각종 투표 편의 시설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기회를 가져 뜻깊은 시간이었음.
- 미국 선거제도와 장애인 관련 제도 등 충분한 사전 연구와 숙지를 통하여 연수 현장에서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연수 과정에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

【별지 1】

<u>수집 자료 목록</u>

연번	수집처	제목	비고			
1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				
2		Assistance Register To Vote In Your State By Using This				
3						
4						
5						
6						
7		Votion 101 (Election Information for New Voter)	"			
8		Basic Poll Worker Manual	책자			
9	New York City Board of Elections	Accessibility Clerk Manual	"			
10		Interpreter Manual	"			
11		Election Day Coordinator Training	"			
12		Coordinators Journal	우편물			
13		Voting Process	유인물			
14		Notice To Voters 2종 (투표자에게 알림, 선거진술서 및 법원 명령 투표지침)		"		
15		Challenge Oath	"			
16		Ballot Privacy Sleeve (모의 투표용지 포함)	"			
17		후보자 선거운동 홍보물	"			

미국 선거제도

1.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

가. 유궈자 등록

○ 미국에서는 선거연령(18세 이상, 카운티 및 시에 거주하는 자로 투표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투표를 하기 위해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이 필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권자 등록 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을 밝히도록 요구

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와 본선거(general election)

- O 미국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형식으로 뽑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되며, 동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
- O 일부 주에서는 당원대회(caucus)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있으나, 점차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임.

다. 투표율

- 미국의 투표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투표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낮은 수준 (투표율 : 대선 50~60%, 중간선거 35~46%)
 - * 2020 대선의 경우, 66.77%의 투표율 기록

【미국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 ·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권자 등록 의무가 정부에 있으나 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 유권자 등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
- · 많은 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가 곤란

라.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 26개 주(州)와 워싱턴D.C.에서 주민발안(initiative) 및 주민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 주(州)에서 주민소환(recall) 제도 실시 중

2. 대통령선거

가. 개 관

- O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교체를 실현해 온 국가
 -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 이래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59번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46명의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 4년을 주기로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78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
- O 이처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최고 리더십의 안정적인 교체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 미국은 대통령제의 원형 국가이지만 독특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선거제도는 대체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방향 으로 변화

나. 선거절차 개요

1) 대통령 후보 지명

O 제1단계: 각 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 제2단계 : 각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2) 대통령 선출

○ 제3단계 :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 제4단계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

O 제5단계 :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 및 당선 선포

다. 대통령 후보 지명

1) 전당대회 참가 대의원 선출

- O 각 당의 주(州) 지구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가 할 대의원 선출
- 주별 및 정당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비선거 또는 당원회의를 통해 선출. 선거실시 연도의 2~6월에 걸쳐 주별로 대의원 선출 각주가 후보지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그 일자를 앞당기려는 추세

2) 전당대회

- O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거실시 연도 8~9월경 소집되는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참석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선출
 - * 2020년의 경우, 민주당은 8.17~20.(위스콘신),공화당은 8.24.~27.(노스캐롤라이나)
- O 투표 결과 대의원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 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생길 때까지 투표 계속

라. 대통령 선출

1)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사실상 대통령 선거)

- O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유권자가 선출한 선 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는바, 각 주의 유권자는 소속 주 출진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 선거인단을 선출
 - 선거인단 총수(538명) : 상원의원수(100) + 하원의원 수(435) + D.C.(3)

【하원의원 수는 1912년 이래 435명을 최대로 하여 고정】

- · 미국의 주별 하원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르는데, 하원의원 수 역시 인구증가 및 새로운 주의 연방 편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 다만, 하원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하원의원 수의 계속적인 증가가 허용될 수 없었던바, 연방의회는 1911년의 하원의원 수 할당법(Apportionment Act)에 의해 435명으로 의원수를 고정

- 각 정당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 선거인단의 명단(slate)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11월 첫 번째 일요일 다음의 화요일에 이들 slate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여, 투 표결과 다수득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
 -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완결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며,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당선이 결정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정해진 이유】

- · 주마다 상이하던 선거일자를 통일한 법안이 법안이 통과된 1845년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추워지기 전인 11월이 선정
- · 일요일은 당시 대부분의 유권자가 교회에 가야 했으므로 제외 / 수요일은 농부들이 시내에 가서 농작물을 판매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제외
- · 이동수단이 발달하기 전 투표장까지 이동해야하는 교외지역 사람들의 이동시 간을 고려하여 일요일과 수요일의 다음날인 월요일과 목요일 제외
- 특정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싱방식(winner-takes-all)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중요
 - 단, 네브라스카(5석)와 메인(4석)의 경우, 주 전체에서 다수득표자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하고, 하원의원 지역구 별로 1석씩 별도 배정

【선거인단이 많은 주】

· 캘리포니아(55), 텍사스(38) 뉴욕(29), 플로리다(29), 일리노이(20), 펜실베니아 (20), 오하이오(18)

【하원의원 수가 단 1개에 불과한 주】

· 버몬트, 델라웨어, 알래스카,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주 및 워싱턴D.C. (단 3명의 선거인단만 선출)

2)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

O 각 주의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 요일에 주도(州都)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투표 O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밀봉되어 연방 상원의장(부통령)앞으로 우송

3) 개표 및 당선 선포

○ 상원의장은 선거 다음 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결과를 공개 집계, 선거인단 투표수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로 선포



지난 2020년 11월 3일 (화) 치러진 미 대선 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81,283,501표 (독표율 51.3%)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232명 확보에 그친 트럼프 후보 (74,223,975표, 46.8%)를 제치고 당선

3. 상·하원 의원선거

가. 개 관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양원의 선출단위와 임기가 서로 달라 의회 내에서도 권력 분립 발생

[연방의회 선거제도]

	하원	상원
의원 수	435명	100명
의석 할당	주의 인구수에 비례	각 주마다 2명씩
임기	2년	6년
선거주기	2년마다 모든 의선 선출	2년마다 전체 의석의 1/3 선출
자격	25세 이상, 지역구가 속한 주에 거주, 7년 이상 미국 시민권 유지	30세 이상, 대표하는 주에 거주, 9년 이상 미국 시민권 유지
임기 제한	없음	없음

- O 미국 건국자들은 의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권력기관이 되도록 구상
 -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상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앨리트들로 구성하고, 하원은 단기적으로 지역구의

- 이해관계를 전국적 차원에서 다루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상
- 따라서 하원의원들은 가까운 이웃처럼 서로가 알고 지내면서 일생 생활의 요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하원의원들에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

나. 상원의원 선거

○ 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각 주에서2명씩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상원의원 임기는 6년 으로, 2년마다 총 의석의 1/3씩 선출)

다. 하원의원 선거

- O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며,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어 각 주의 선거구당 1명씩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하원의원은 모두 2년 임기의 선거로 선출
- O 헌법에 의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주별로 하원 의원 수를 재배분(reapportionment)하며, 주의회는 주내의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를 재획정(redistricting)

라. 현직의 이점

- 하원의원의 재선율이 90%를 상회하고 상원의원 재선율도 80%를 상회하는 등 현역의원들의 재선율이 매우 높음. 이는 이익단체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도전자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현역의원들에게 선거자금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현역의원들은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임.
- O 한편,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도전자들도 독자적이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고 주(州) TV방송들이 한 주에서 여러 명을

뽑는 하원의원 선거보다는 주 전체에서 1명만을 뽑는 상원의원선거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도전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아 도전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마. 중간선거

-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일반적으로 의석을 늘리게 되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mid-term 또는 off-year election)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 즉, 재임 6년째 실시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짐.
 - 대통령은 당선 후 현실정치의 제약 때문에 선거공약을 그대로 실천 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해 중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실망한 대통령의 핵심 지지계층이 중간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 의석이 감소
 - 1862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석 수를 늘린적은 단 3번(1934년, 1998년, 2002년)
 -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약세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 상원의 경우 정원의 1/3만 개선하고 상원의원들은 지명도가 높고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국을 휩쓰는 정치적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높기 때문임.
- O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 될 사람의 높은 인기도 때문에 소속당 의원 후보들이 혜택을 보나 (coattail effect) 당선 후 점차 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중간선거 에서는 대통령 소속당 후보들이 불리해지는 현상이 발생

4. 정치자금 제도

가. 선거와 정치자금

- O 미국선거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선거자금이 소요
 - 2020년 연방 상·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비로 지출한 돈은 약 17.2억불(하원 9억1천만, 상원 8억1천만불)이며, 승리한 하원 후보의 평균 지출액은 279만불, 승리한 상원 후보의 평균 지출액은 3,653만불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법률이 제정되는 즉시 후보, 정당, 이익단체들이 법의 허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선거자금 모금방법을 찾아내고 위헌 소송등을 통해 법률의효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
- '연방선거운동법' 등에 의하면 연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개인,
 ▲정치활동위원회(PAC), ▲소속 정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보 개인이나 가족들의 돈은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
 - 기업, 노조 등 이익단체는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결성하여 연방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정치자금 기부 가능(현재 연방 선관위에 등록된 PAC는 약 4천여개)
- 그러나 ▲개인, ▲이이단체, ▲정당 등은 소위 소프트 머니(sofe money)라고 불리는 자금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 가능
 - 단, 소프트 머니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 정당 혹은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모금
 - * '연방선거운동법' 등 선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모금되는 선거자금을 'hard money'라 부르는 반면 동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모금되는 선거자금을 'soft money'라 지칭

선거 자금 관련 주요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1971년): 개인은 특정 후보에게 매 선거당 (예비 선거와 본선거는 별도의 선거) 1천불, 정당에 연간 2만불,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연간 5 천불 등 총 연간 2만 5천불까지 기부 가능. 정치활동위원회(PAC)는 특정 후보에게 매 선거당 5 천불, 정당에 연간 1만 5천불까지 기부 가능하나, 연간 기부총액에는 제한 부재
- 선거자금개혁법(Campaign Finance Reform Act, 2002년): 기업, 노조, 개인 등이 전국 중앙 당에 기부하는 soft money 전면 금지. 개인의 hard money 기부한도 인상(매 선거당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한도를 1천불에서 2천불로 인상 등)

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적지원

- O '연방선거운동법'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납세자들의 기부금으로 '대통령 선거운동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
 - 일반 납세자들은 매년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대통령선거 운동 기금' 항목체 체크(√)함으로써 3불씩 기부(이는 납세액에서 공제됨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의 납세자만 참여)



예비선거

- 20개 이상의 주(州)에서 각 개인으로부터 25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총 5천불 이상을 모금한 후보는 연방선관위에 공적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선관위는 후보가 모금한 액수와 같은 금액(matching fund)을 지원함.
 - 그러나 연방선관위의 공적지원을 받는 후보는 선거자금의 지출액에 있어 제한을 받음.



본 선거

- · 공화, 민주 양대 정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된 대통령 후보에게는 연방선관위가 공적지원을 제공하는바, 동 지원을 받는 후보는 동 지원금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여야하며 여타 모금을 할 수 없음.
- 공적지원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번 조금씩 인상되는바, 2020년의 경우 양당 후보에게 약 1억불씩 지원. 제3의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5%의 득표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후보와는 달리 선거종료 후에 지급함.

미국 정당제도

1. 정당의 발전과정

□ 양당 정치체제의 성립 및 변화과정

- O 186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양당 정치체제를 구축
-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후 민주당은 뉴딜정책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규합 하였고,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에 반대하는 남부 보수세력의 전통적인 지지를 향유. 이러한 정치구도는 민권운동이 강화되면서 변화되어 닉슨대통령이 1964년 흑인의 투표권 등을 보장하는 공민권법을 통과 시키고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부의 보수세력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
- O 1970년 이후에는 양 정당 간의 우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특성.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도는 낮아지고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
 - * 상기 현상을 양당의지지 계층 간 이동과 TV-선거캠페인 전문기관등의 발전으로 인해 정당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하기도 하여 정당정치의 쇠퇴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등장. 그러나, 정당은 여전히 대의 민주 정치에 있어 국민의 정치참여 수단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 민주·공화당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고 그 조직은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있으며 정책방향은 이념성을 배제하고, 미국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지지 기반이나 개별 정책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

2. 미국의 주요 정당

가. 공화당

- 공화당을 GOP(Granc Old Party)라고 부르는데, 공화당의 기본 노선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축소 및 주정부의 권한 증대, 개인의 자유·경제 활동의 확대
- 공화당은 백인이나 남성, 그리고 교외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남부와 남서부에서 지지도가 상승하는 반면 동북부에서는 하락. 인종적·종교적으로 다수파(백인과기독교인)와 사회·경제적 부유층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 1970년대에는 민주당지지 성향인 기독교 기본 원리주의자들도 지지

나. 민주당

- 민주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서 1793년 창당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 그 기원이며, 지금의 민주당으로 공식 명명된 것은 1840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뉴딜정책 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소득 재분배와 시민권 보장 정책을 중시
-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남부 백인, 변방 정착민, 도시근로자 등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으나 1970년 이후 기반이 약화. 남북전쟁 이후 부동의 민주당 지지 세력이던 남부 백인들이 이탈하여, 민주당은 남부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상실. 전통적으로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노동조합원, 카톨릭교도의 지지는 감소하고있으나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적 소수 집단의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

다. 소수 정당

O 미국 정치사에 수백 개의 소수 정당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현재 대표적인 소수 정당은 자유당, 녹색당, 입헌당임. 과거 소수 정당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됨. 첫째, 이념 정당으로서 공산당, 사회당, 사회주의 노동당, 녹생당 등 / 둘째, 이슈 정당으로서 채식주의자당, 금주당 등 / 셋째, 경제적 지향 정당 으로 인민당 등 / 넷째, 특정 후보에 의해 설립된 후보 지향 정당으로서 개혁당, 진보당

○ 미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①유권자들의사표 방지 심리, ②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의회와의 대립 갈등 우려, ③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및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 ④전통적으로 영구겡서 유래된 양당체제 선호경향, ⑤언론에서의 소외 등이 거론되고 있음

3. 양당간 차별성

[소수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정치 환경]

미국 정당은 분권화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당 내 에서도 대통령이 행정부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어렵고, 당지도부도소속 의원 들이 반드시 당 노선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당내에서도 상·하원 선거운동 위원회들(현역 의원들로 구성) 은 대통령 위주로 움직이는 전국 위원회로부터 벗어나 자치적으로 활동.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좁은 범위의 권한을 제외 하고, 전국조직은 각 주별 당 업무 간섭하지 않음. 개개 입 후보자들은 총선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선거 운동을 조직하는 경향 선거 자체가 정당중심이라기 보다는 입후보 중심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전국조직이나 당지도부의 입지가 축소되는 현상



제3의 후보

제3의 후보 중 최근 큰 지지를 받았던 후보로는 로스 페로(Ross Perot, 1992년과 1996년에 출마)가 있음. 1992년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의 18.9%의 득표를 하였으나, 양당제에 유리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단 한 주에서도 최다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인단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함. 1996년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의 8%를 확보함.

○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른 지지기반의 차이와 함께 이념 성향과 정책에 다소 차이가 존재

-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경제 부분 정책에 있어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화당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입장이며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지지
- O 환경문제에 있어 민주당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개발을 더 중시하는 입장
- 복지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노년층 의료 보호 강화에 관심이 많고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유지를 통한 공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낙태문제를 임산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데 반해, 공화당은 낙태문제는 산모의 권리보다는 태아의 보호를 중시하여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동성결혼도 반대

4. 정당의 조직형태

가. 전국단위 조직 및 역할

- O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당은 중앙당 개념이 없으며, 풀뿌리 당 조직인 선거구 위원회(precinct committee) 구성원들이 시 또는 카운티 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이들이 주 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향식 조직 구조를 형성
- O 당의 전국 단위 조직은 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전당대회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당대회 준비와 선거 캠페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
- O 민주당, 공화당 공히 전당대회가 의사결정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전국위원회는 연 2회 회의개최
 - 1948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1956년에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Repuvlican National Committee) 조직

- 전국위원회는 당 위원회 연합(confederations) 형식으로, 구성원은 각주에서 선정하는 대표자(representatives)들로 구성되 있음. 전국위원회에는 최고지도자로 의장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가 선출. 전국위원회의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나 후보 지명자가 선정하지만비선거기간 중에는 위원회에서 호선. 의장은 위원회를 공식 대표하고 당행정을 총괄하며, 특히 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경우 상당한 정치적영향력을 보유
- 전국위원회는 주로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거 기금 만련 및 배분, 선거 전략 작성, 여론조사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 또한, 주와 지방정당, 소속당 출신 선거직 공무원, 후보자 등과 긴밀한 연락 및 지원도 병행

나. 의회내 조직

○ 상·하 양원에는 정당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 의회 위원회와 공화당 상원 위원회. 민주당은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와 민주당 상원 선거 위원회로 구성

다. 주 단위 조직

- O 미국 정당조직의 근간은 주 단위 이하의 지방조직이며, 선거직 공무원 대부분은 지방 당 조직에 정치력을 집중. 주에는 시나 카운티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 당위원회(State Party Committee)가 있으며, 주에 따라 크기나 구성, 기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
- 주 위원회는 전당대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전구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
- 주 위원회는 전국위원회처럼 상근직원을 두면서 선거자금 모금. 주단위 에서도 공화당이 민주당 보다 정치자금 고금 등 당 운영을 우세한 것으로 평가

라. 지방단위 조직

- O 정당조직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은 미국 전역에서 10만개 이상의 선거구 단위별로 구성하는 선거구 위원회(Precinct and ward committee)로 이들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를 구성
- 지방 단위 조직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체로서 결속력은 약하며, 선거에 즈음해서 조직되어 정치자금 모금 당원 관리, 캠페인 등 정당활동을 전개
 - 지방단위 당 조직의 활동 양태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양당 대결이 첨예한 곳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당 활동이 침체

미국의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제도

□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제공방법

1. 장애인유권자용 홍보물

- 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하여 개별후보자의 점자홍보물이나 오디오홍보물 같은 것이 따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지는 않음. 「장애인법」(ADA)에서도 주로 투표소와 관련하여 장애인유권자의 접근성에 집중해 있을 뿐 선거 및 후보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제작하라고 규정 하고 있지는 않음.
- 장애인들의 기본권으로서 투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선거를 홍보하고 장애인들의 투표를독려하는 사회적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는 있음. 이들은 선거독려 홍보물부터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시 필요한 절차 안내 및 선거도우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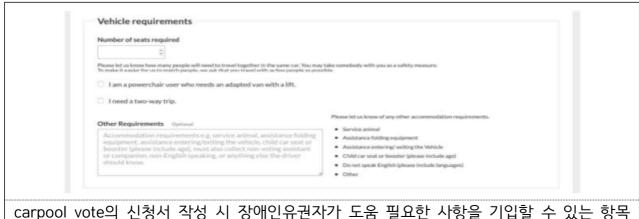


2. 수화.자막 방영(방송 시)

○ 선거에서 후보자간의 TV토론에서 장애인유권자를 위하여 수화방송이나 자막을 넣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장애인법」(ADA)에서 따라 각 지방정부가 공공용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청각 및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및 음성설명을 넣어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음.

3. 교통편의 제공(투표소 이동용)

-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보다는 시민사회 및 장애인단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일반적임. 선거일 당일 투표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단체가 선거일에 투표소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장애인유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교통편이 필요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를 지원해주는 "carpool vote"와 같은 시민단체가 있음. 이 단체는 카풀을 제공하기를 위한 유권자와 카풀이 필요한 유권자를 매칭해주는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모든 유권자가 쉽게 투표소에 접근할 수 편의를 제공. 특히 지원서 내에 장애인 및 거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유권자들도 이를 활용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4. 투표소 건물형태

-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투표소는 주로 학교 (24%), 도서관 등 주민시설(21%), 교회 (18%), 시청 및 법원(14%)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08년 선거일에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투표소는 전체 투표소의 27.3%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미 법무부가 권장하는 투표소의 형태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과 평지의 고른 보도, 휠체어 등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출입할 있는 출입구, 장애요소가 되는 문턱 등이 없는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접근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O 현실적으로 투표소가 기존의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주로 이용 한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접근가능성의 차이가 존재함.

5. 투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O A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표소에 접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 1:20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임시경사로가 6인치(약15cm) 이상 길이가 되는 경우 임시경사로 양편에 손잡이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이밖에도 문턱의 제거 등과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유권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할 것을 권장함.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경사로

6. 장애인유권자용 기표대 설치

- 미국의 경우 주별로 기표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 투표기를 활용한 전자투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 전자투표기가 조금씩 상이함.
- 장애인유권자가 일반기표대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장애인 전용 기표대를 설치하고 있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유권자를 위한 휠체어 전용 기표대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좌식 기표대 등이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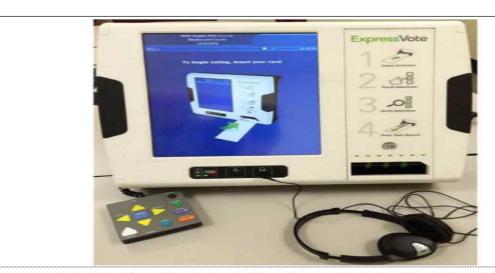


높이가 조절 가능한장애인용 기표대

- O 알라스카, 아리조나,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는 투표소로 입장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유권자나 장애인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 도우미가 기표용지 및 투표와 관련된 기기를 휴대하여 투표소 밖에 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두투표방식(curbside voting)을 제공하기 함. 장애인 유권자는 사전에 자신의 투표소 도착시간을 통보하거나 투표소 도착하여 투표소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투표도우미가 주차장 또는 투표소 근처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투표관련 서류 및 장비를 휴대하여 기표를 돕게 되어 있음.
- 텍사스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를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유권자나 장애인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소를 찾지 않더라도 우편을 통한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우편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 워싱턴, 오레곤, 뉴저지 등과 같은 주는 투표소가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곳을 사전에 통보하고 접근성이 보장된 대체가능한 투표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투표당일 접근성이 보장된 투표소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들은 법으로 이를 규정한 주도 있고, 정책적으로만 이를 반영하는 주도 있음.

7. 투표보조용구 설치

- 주별로 기표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기표기를 활용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기표기가 장애인들의 투표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점자 및 헤드셋, 큰 글자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보조 입력장치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활용가능할수 있는 기능들을 내재하고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표기의 경우, 점자를 병기한 기표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어폰, 큰글자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있어 투표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또한 일부 투표기기는 휴대성을 갖추고 있어 거동이나 동작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있도록 기표대에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함.
- 텍사스, 켄터키, 오레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주 등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eslate는 점자, 헤드폰, 입력보조기구 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사지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입으로 공기를 들여쉬고 내쉬는 것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sip and puff' 보조 기구를 연결하여 의사를 표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헤드셋, 보조입력기구를 갖추고 있는 투표기



8. 투표도우미 배치.활용 등

- O 1965년 제정된「선거권법」(The Voting Rights Act; VRA)에서는 시각 및 청각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3) 2002년 제정된「선거지원법」 (Help America Vote Act; HAVA)에서도 장애인유권자들의 투표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선거당담 직원 및 투표소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투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투표소에서 장애인유권자의 투표를 원활하게 하기 투표소 직원 및 인력 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예를 들어 코네티켓 주에서 는 투표소 인력에 대한 장애인유권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교육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을 대하는 태도, 언어,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투표소 직원들의 대체요령 등을 작성하여 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표소에서 장애인유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Disability Rights Texas"와 같은 단체의 경우, 투표소 인력들이 장애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